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8. 19 선고 2020가단447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8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. 3. 30. 접수 제20338호로 마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지현

별지